



이세무뉴스에 주목할 만한 내용 :

Covid-19 영향에 대한 대응

1.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2020년04월08일 제41/2020/ND-CP호 시행령
2.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고용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3. 의료용 마스크 및 천 마스크 수출 정책
4. Covid-19로 인한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기타 규정

5. 교육 기간동안 받은 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6. 투자허가서상 예정보다 지연된 신규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7. 베트남 고객으로부터의 대금회수, 보세창고를 통한 상품 판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정책
8. 베트남이 참여한 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ROO")에 대한 일부의 규정 수정 및 입법

01

조세관리

02

법인소득세

03

개인소득세 및 노동 관리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조세관리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2020년 04월 08일 제 41/2020/ND-CP호 시행령 ("제 41호 시행령")

정부는 2020년 4월 8일에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 41호 시행령을 발행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서명일부터 유효합니다. 시행령 세부 내용은 Deloitte Vietnam 2020년 04월 13일자 세무뉴스를 통해서 공유되었습니다.

세무총국은 2020년 04월 20일에 직할도시 및 성 세무국에 본 시행령 실행을 위한 제 1563/TCT-KK호 OL을 발행하였습니다.

조세관리 일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을 위한 시행령 초안

시행령 초안은 9개 장 및 44개 조항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조세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세금 계산; 세무 평가; 납세 기한, 납세의무 수행 책임; 세금 환급, 세금 감면 및 면제; 연체이자 및 벌금, 납세자의 정보 제공 책임 및 기타

시행령은 정부 발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정된 조세관리법의 발효 시점과 동일하게 2020년 7월 1일부터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안 상세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서류에 관한 시행령 초안

재무부는 2020년 4월에 세금계산서 및 서류에 관한 제 119/2018/ND-CP호 시행령을 대체할 새로운 시행령 초안에 대해 법무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시행령은 제 38/2019/QH14호 조세관리법 및 부가가치세법 ("VAT"), 수수료 관련 법률 규정, 회계법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세금계산서 관리, 조세 당국의 전자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령; 영수증과 전표 관련 규정, 세금계산서와 전자 문서에 사용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 개인과 단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담은 6개 장 및 5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사용은 시행령에 언급된 바와 같이 늦어도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초안 상세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신규 규정

법인소득세



비 현금 결제 방식

회사가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경우:

전년도에 은행을 통해 지급되어야 할 매입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당 거래는 회계장부에 기록되었으며 연말 채무조회시 미지급 잔액은 없음).

다음연도에 은행을 통한 지급으로 보이기 위해 판매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은행을 통해 이체하고 판매자는 은행을 통해 이 금액을 다시 회사에 이체함.

위와 같은 결제 방식은 적법한 비현금결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금액은 CIT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입부가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0년03월31일 제1366/TCT-KK호 OL)

지점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부동산 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본점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점은 아래와 같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VAT:

- 회사가 지점에 계약 및 계산서 발행은 위임하였으나 직접적인 부동산 관리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국에 2%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다.

- 회사가 지점에 부동산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전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사업활동을 위임한 경우, 회사는 매출 부가세, 공제대상 매입 부가세 및 부가세 잔액을 계산하고 본사에서 신고한 부가세 금액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지점에 이관해야 한다.

CIT:

- 회사는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국에 분기별로 세금을 예납하고 본사가 소재하는 지역 세무국에 프로젝트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을 신고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04월13일 제1471/TCT-KK호 OL)

회사 방문 고객 초청 비용

회사의 초청에 의해 회사를 방문하게 된 고객이 이와 관련한 항공권 및 숙박비를 스스로 결제하고 향후 회사가 이 비용을 고객에게 보상해 준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및 관련 서류가 회사명으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01월09일 제232/CT-TTHT호 OL)

유통 업체를 통해 시행되는 프로모션비용

회사가 유통 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프로모션 비용이 2015년 06월 22일 제 96/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을 충족하면 프로모션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01월31일 제749/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목적으로만 사용



개인소득세 및 노동관리



신규 규정

노동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정부 규정에 따른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용주에게는 최대 VND75million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무처의 급여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 변경 시점으로부터 10 일전에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소 VND 2 mil에서 최대 VND 5 mil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로 전환시키면서 3일전 또는 일시적인 업무 전환기간 동안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의 건강 및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로 전환시킨 고용주의 경우 최소 VND 1 mil에서 최대 VND 5 mil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로 전환시키거나 부적절한 기간 또는 근로자로 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소 VND 3 mil에서 최대 VND 7 mil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 부 의 2020 년 03 월 01 일 제 28/2020/NĐ-CP 호 시 행 령 은 2020년04월15일부터 유효하다)

지침 문서

Covid-19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고용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규정된 지역 기준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고용주가 장기간 고용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무급 또는 일부 급여 지급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중단 할 수 있다.

사업을 축소, 구조조정 또는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노동 조합은 근로 고용 계획 준비 및 실행에 참여하고 실업 수당 대상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신청을 안내한다.

(하노이 노동연합의 2020년03월30일 제198/LĐLĐ호 OL)

교육 기간동안 받은 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회사가 교육기간 종료 후 근로자와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교육기간동안 받은 소득을 포함하여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세 ("PIT")를 원천징수한다.

교육 종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교육기간동안 매월 VND 2million 이상의 금액에 대해 10%세율로 PIT를 원천징수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3월25일 제14151/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목적으로만 사용



부가가치세

지침 문서

투자허가서상 예정보다 지연된 신규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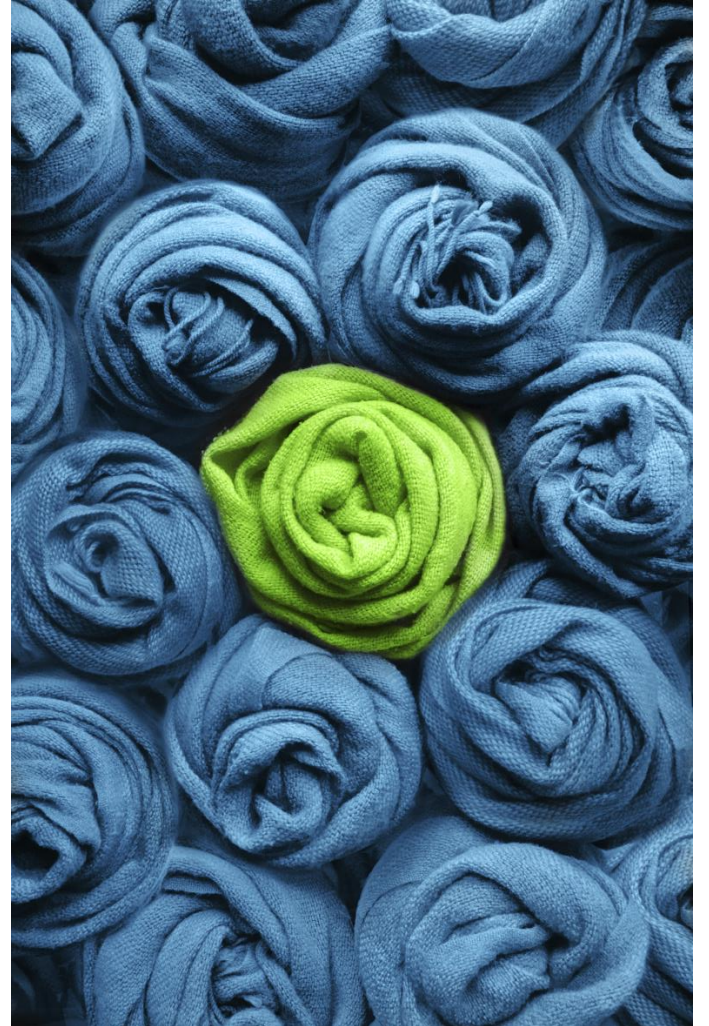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허가서상 등록 및 명시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실제 진행일정을 반영하기 위해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서 수정 신청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전 상태로 투자 규정 및 부가가치세 규정을 만족하는 투자사업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계속 부가세 환급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 01월 04일 제1393/TCT-KK호 OL)

부동산 양도시 공제 가능 토지 가격 확정을 위한 인민위원회 토지 가격표 사용

최초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인민위원회가 정한 양도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따른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3월 30일 제15991/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목적으로만 사용

외국인계약자세



지침 문서

베트남 고객으로부터의 대금회수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부과

외국기업 ("FC")이 베트남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베트남 기업 ("VNCo")으로 하여금 베트남 고객으로부터 해당 용역수수료를 회수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수익은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을 대신해 수수료를 회수하는 베트남 기업은 5%의 VAT 및 5%의 CIT로 외국인 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하고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 책임을 가진다.

(세무총국의 2020년 03월 31일 제1388/TCT-DNL호 OL)

보세창고를 통한 상품 판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FCWT") 부과

회사가 해외 공급자로 부터 원자재 및 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이 베트남 영토에 위치한 보세창고를 통해 회사에 전달되는 경우, 공급자의 베트남내 상품 거래 및 유통 활동은 FCWT가 부과대상이다.

공급자가 현지 세무국에 세금을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가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해 과세소득의 1%를 CIT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0년 03월 27일 제677/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목적으로만 사용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베트남이 참여한 무역협정 및 자유 무역 협정 원산지 규정 ("ROO")에 대한 일부의 규정 수정 및 입법

- CPTPP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 양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MOIT")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ROO; 베트남의 CPTPP CO양식; CPTPP양식의 CO 추가 신고서 양식 및 CPTPP양식의 CO 신고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내용을 담은 수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 AANZ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C/O 양식과 관련하여 MOIT는 협정의 원산지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AANZ C/O는 수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업체나 생산업체 또는 수입위탁된 제3자가 상업송장 발행시 송장 번호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VN-CU (베트남-쿠바 무역협정) CO 양식과 관련하여 MOIT는 COO에 대한 신규 시행규칙을 발행하여 제품 품목에 대한 구체적 규정; VN-CU CO 양식; VN-CU수출C/O양식 신고 안내 및 VN-CU양식의C/O를 발행하는 베트남 기관 목록을 제공하여 다.

(MOIT 의 2020 년 03 월 24 일 제 06/2020/TT-BCT 호 시행규칙; 2020 년 03 월 30 일 제 07/2020/TT-BCT호 시행규칙; 2020년04월08일 제08/2020/TT-BCT호 시행규칙)

지침 문서

2020년04월01일 이후 VNACCS 시스템 신고를 통한 기계 및 장비 수입

기업이 제 84장 및 85장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5개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

- 새로운 상품의 경우 "MO" 로 신고;
 - 중고 상품의 경우 "CU" 로 신고;
- 신고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관세 신고서가 VNACCS 시스템 상에서 반려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0 년 03 월 30 일 제2061/TCHQ-GSQL호 OL)

CPTPP 협정에 따라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Bill of Lading)

CPTPP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CPTPP에 따른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해상 운송의 경우: 화물은 봉인된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수출국가 선적시점부터 베트남 도착시까지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전자 운송시스템 (e-manifest) 조회 결과와 동일해야 한다
- 항공 운송의 경우: 각 경로별 Master Airway Bill을 갖추어야 하며 적재 지점에서 수입국 하역지로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House Airway Bill 이 존재하고 Master Airway Bill, House Airway Bill 및 세관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관세총국이 발행한 2020년03월27일 제2019/TCHQ-GSQL호 OL)

출국 기한이 경과한 운송 수단에 대한 제재 면제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한 재화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이 운전기사의 의무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출국 기한을 경과한 경우, 출국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행정 위반에 대한 제제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0 년 04 월 01 일 제2144/TCHQ-GSQL호 OL)

의료용 마스크 및 천 마스크 수출, 기타 규정

현재 의료용 마스크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보건부(Mistry of Health)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 천 마스크는 의료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 대상이 아니다.

(관세총국의 2020 년 04 월 09 일 제 2283/TCHQ-GSQL 호 OL, 2020 년 04 월 07 일 제 2226/TCHQ-GSQL 호 OL; 산업통상부의 2020년04월14일 제2632/BCT-XNK호 OL)

Covid-19로 인한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관세총국 ("GDC")은 Covid-19로 인한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현행 조세 관리법상 전염병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세총국의 2020 년 04 월 08 일 제 2235/TCHQ-TXNK 호 OL, 2020 년 03 월 25 일 제 195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 또는 판매 아니라 참고목적으로만 사용



Why Deloitte?

Understanding that your unique concern requires unique solution, we offer meticulously carved and individually tailored solution to address your specific concern at any stage of your investment.

Our approach combines insight and innovation from multiple disciplines, industry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to help adding value to your business locally and globally from our undisputed market leader advantag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Vietnam

Deloitte Vietnam, a pioneer in the Advisory and Audit industry with nearly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Vietnam market, is part of the Deloitte Global network, one of the Four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s in the world. Our clients are served by over 1,000 staff located in our Hanoi and Ho Chi Minh City offices with access to the full strength of our Deloitte Asia Pacific member firm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Deloitte Vietnam delivers value-added services in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 Corporate Governance, Tax & Legal, Consulting, Audit & Assurance and Professional Training Service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